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8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정문 · 안호영
서영교 · 서미화 · 이원택
안도걸 · 박민규 · 박수현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.

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「형법」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

실화하고,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 제2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14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제32조제3항 중 “14세”를 “12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2세”를 “10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<u>14세</u> 미만인 소년</p>	<p>제4조(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12세</u>----- -----</p>
<p>제32조(보호처분의 결정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<u>14세</u>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<u>12세</u>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.</p> <p>⑤ · ⑥ (생 략)</p>	<p>제32조(보호처분의 결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12세</u>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<u>10세</u>----- -----.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